

-울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2024년 울산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2024년 울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울산 특화 소재 및 전략사업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3. 6.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특화된 소재(역사, 문화, 관광, 축제, 산업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지역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특수성을 겸비한 콘텐츠 발굴
- 우수 콘텐츠 발굴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대한 본편 제작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울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1. 30.

※ 협약체결일 : '24. 5. 1. ~ 11. 30.(7개월)(예정)

- 지원규모 : 4건 / 총 480백만원(국고+지방비)

사업유형	지정공모	자유공모	프리프로덕션
지원규모	2건	1건	1건
지원금액	100~200백만원 내외	100백만원 내외	80백만원 내외

※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직접 비용

※ 지원 과제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분야 별 **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울산 소재 콘텐츠 기업

(참여기관) 역외기업(서울 포함), 지역 기업 컨소시엄 가능(선택)

- 1)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선정 후 과제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울산으로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2)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 컨소시엄 가능(서울 포함,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
 -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 이어야 함
- 3)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단 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4) 콘텐츠 기업만 가능(부동산업, 비영리기업 지원 불가)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 5) 주관 및 참여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가능 (타 시·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지원 불가, 타 시·도 과제 선정 확인 시 우리원 선정 과제가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민간자부담(10% 이상) 별도 편성 필수

(필수) 민간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기부담금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제출

○ 지원내용

- 지역 콘텐츠 소재(문화관광, 자연·생태, 산업·제조)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지원
- 콘텐츠 프리프로덕션 제작 지원

○ 지원분야

공모방식	장르	소재	총사업비(지원금)
지정공모	실감콘텐츠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등)	울산왜성, 임진왜란	200백만원 내외
		지역특화소재	100백만원 내외
자유공모	전 장르	지역특화소재 ※게임, 실감콘텐츠 제외	100백만원 내외
프리프로덕션	애니메이션 영상	지역특화소재 애니메이션, 영상(웹드라마 등)	80백만원 내외

※ 자유공모 지원장르

-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융복합 등

* 제외분야 : 게임, 실감형 콘텐츠(미디어 파사드, AR·VR·홀로그램·프로젝션 매핑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콘텐츠의 최종 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프리프로덕션 제외)

※ 최종결과물 제출 형태를 기준으로 지원 장르 선택

2 세부내용

□ 제작지원

○ 공모방식 : 지정공모(2건), 자유공모(1건)

○ 주요내용

-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 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 / 인프라·관광자원·문화 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지역특화 콘텐츠 개념

-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 / 인프라·관광자원·문화 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분야
 - ① 지정공모 :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 ② 자유공모 :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융복합 등
 - ※ 게임, 실감형 콘텐츠 제외
 - ※ 융복합콘텐츠도 지원 가능함(단,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중점방향 및 사항

- (중점사항) 과제 기획 시 고려 사항
 - ① 지역의 특화된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지역기여도가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② 상용화 추진(판매, 방영, 출판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 ③ 1회성 매출 지양, 연도별 매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지정공모 콘텐츠 개발 목적 및 내용(예시)

※ 별첨 참조

순	관련 지자체	소재	콘텐츠개발 목적
1	울산박물관	울산왜성, 임진왜란	• 설치장소 : 울산박물관 실감영상실 • 개발의 필요성 - 울산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성곽 문화재를 알리고, 울산 지역의 재미있는 성(城)역사와 우리에게 친숙한 임진왜란 속 울산을 스토리텔링하여 군사도시로서의 울산 역사를 콘텐츠로 표현하여 문화 향유 제공 및 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 • 개발 내용(예시) - 임진왜란 당시 울산왜성(문화재 자료)에서의 이야기(울산성 전투)를 고등한 스토리텔링 실감 영상 제작 -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임진왜란의 역사적 배경), 울산의 임진왜란(임진왜란 시기 울산 일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울산 의병 포함)) - 영상스토리 : 임진왜란 발생, 임진왜란의 울산 전투, 임진왜란의 결과, 울산 왜성(드론 촬영) ※ 울산박물관 실감영상실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현황 - 공간면적 : 101.72㎡(약 31평), 4면 스크린(벽 3면 + 바닥 1면, 후면 거울) - 하드웨어 : 프로젝터 5대(레이저 12,000lm), PC 5대(CMS 포함, 음향 5.1채널)
2	슬도아트	지역 특화 소재	• 설치장소 : 슬도아트 전시실 `트` 갤러리 • 개발의 필요성 - 소리박물관 재구조화 사업으로 개관한 `슬도아트`는 전시와 예술 체험을 메인 콘텐츠로 조성된 문화예술시설 - 부족한 지역 인프라로 생활예술인 활동 지원과 지역 공연 예술 공간 협력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간으로 전시와 체험연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절실, 예술가들의 작업이 전시되는 공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린이와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 콘텐츠의 결합으로 관객에게 한 발 다가가는 콘텐츠 필요 • 개발내용(예시) - `슬도명파` :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재현된 소리(아름다운 파도소리, 바람소리, 소리의 중첩 등) 체험 콘텐츠 - `사우스스웰` : 사운드와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예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해녀들의 움직임, 슬도 파도를 자유롭게 누비는 서퍼, 또는 디자인 영상 등)

※ (지정공모) 지적 재산권 소유 및 활용 - 과제 결과물(콘텐츠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유 및 활용은 선정기업, 관련기관, 우리원과의 협약서 협의에 따라 결정

□ 콘텐츠 프리프로덕션 제작지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1건)

○ 주요내용

- 지속적인 활용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 라인이 있는 콘텐츠 개발
- 지역특화소재를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콘텐츠

※ 사업종료 후 평가를 통해 2025년 과제 선정 예정(2단계)

☞ 프리프로덕션

- 정의 : 단순 기획이 아니라 기획, 시나리오, 콘티, 스토리보드, 인물(캐릭터), 스텝 구성, 장소 섭외, 세부 스케줄 및 콘셉트 설정 등 본편 제작 직전 초기 제작 단계까지 의미

☞ 지역특화 콘텐츠 개념

-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 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 / 인프라·관광자원·문화 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분야 : 애니메이션, 영상(웹드라마, 방송영상 등)

☞ 중점방향 및 사항

- (중점사항) 과제 기획 시 고려 사항
 - ① 지역의 특화된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지역기여도가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② 상용화 추진(판매, 방영, 출판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울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신청기업이 울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 타 지역 기업의 경우 지원사업 선정 후 과제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10월 말)까지 울산으로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울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참여 불가

○ 신청 및 제한기준

☞ 신청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지원불가
 -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간 직접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연구개발사업 포함)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대기업이 아닌 경우(대기업 판단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지정 공시하는 대기업 집단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 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또는 이사)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제한기준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일 이전 완료하거나 출시, 공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과제책임자의 경우
- ※ 그 외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름
-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 필수요건 1 _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	지정공모	자유공모	프리프로덕션
신규인력인원	2~3명 이상 ※ 100백만원 내외 2명 이상 ※ 200백만원 내외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지원금액	100~200백만원 내외	100백만원 내외	80백만원 내외

- 「지정공모」의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최소 채용인력 구분
 - ※ 100백만원 내외(2명 이상), 200백만원 내외(3명 이상)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 필수
 - ※ 대체인력 채용기간 3개월 이상
- 컨소시엄의 경우 기업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인 이상 신규채용 권장
 - ※ 신규채용 인력은 울산 지역 근무 필수
 - ※ 신규인력의 경우 참여율(인건비) 100% 편성(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하여야 하고, 사업비 및 e나라도움 예산 및 정산 담당자 지정 불가
 - ※ 인건비는 사업비 내 편성가능하나,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 ※ 사업계획서와 달리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 제재 조치 가능

○ 필수요건 2 _ 교육 참가

사업유형	지정공모	자유공모	프리프로덕션
교육횟수	5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교육내용	사업관리교육 1회 BM 및 사업화 컨설팅 4회	사업관리교육 1회 BM 및 사업화 컨설팅 4회	사업관리교육 1회 BM 및 사업화 컨설팅 2회

※ 사업관리교육: e나라도움 사용,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매뉴얼 배포 등

※ BM 및 사업화 컨설팅: 사업 추진 상황 분석, 사업화 전략등 콘텐츠 질 향상 및 사업화를 위한 논의 등

○ 개발기간 및 사후

- 모든 과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이내 개발 완료 및 상용화(유통 및 서비스 개시) 되어야함

※ 시제품, 테스트 베드 상태 콘텐츠(제품) 불가

- 모든 과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종료일 1개월 전(10. 31.)이내 개발을 완료 하여야 하고, 1개월 동안 테스트 운영

※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로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및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 지원성과의 사후관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4년 간 관리기관(상위기관 등)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제출자료(예시) : 신규채용인력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내역서, 매출증빙(24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적용 불가

- 자부담금(사업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 선집행 필수

※ 자부담금 미집행 시 미집행 비율에 따라 지원금 환수

※ 자부담금의 경우 현물 불인정

※ 사업비 관련 용어설명

◦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현금)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사업비 구성 예시)

총 사업비(A+B,100%)	지원금(A, 90%)	자기부담금(현금) (B=A/9, 10%)	비고
111,111,111	100,000,000	11,111,111	

- 이행보증보험 발급수수료는 본 사업의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참여기관과 참여기관 간 위탁거래 불가
- 향후 사업수행 시 지원금은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 관리 및 상기 계좌와 연동된 e나라도움 전용 사업비 카드 발급 사용
- 자부담은 해당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집행 시 모든 금액의 부가세 미인정
- 예산 편성 시 사업안내문 참고

○ 기타사항

- 신청일 이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1차 지원금 지급 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협약 해약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준비

-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 3. 6.(수) ~ 3. 27.(수)
- 신청기간 : 2024. 3. 6.(수) ~ 3. 27.(수), 15: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클릭 →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신청 사업 선택 → 우측 상단 [신청서작성]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 접수완료**
 ([신청서제출] → [신청서제출])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 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지원사업 공모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접수 전 사업 담당 부서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문의

- 콘텐츠사업단 이해성 전임(☎ 052-277-9218, hslee@uipa.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제출서류목록

- 제출서류 :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신청서 참조 ※ 양식 준용

□ 서류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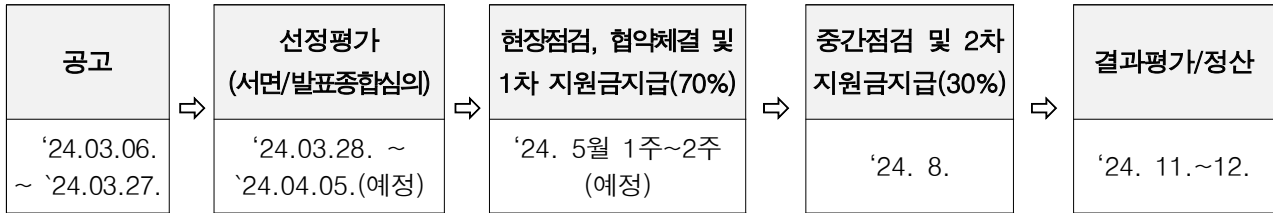
○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습니다.
- 압축파일명 : 공모분야_주관기관명 키워드(짧게)_과제명 키워드(짧게).zip
- (통합버전)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사업안내문 참고)
- (개별버전) 반드시 폴더별 구분하여 저장(사업안내문 참고)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선정절차 안내(안)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발표평가(100%)

○ 평가위원 구성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과제는 서면평가(적격심사), 발표평가, 종합심사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 1차 서면심사(서류적격 심사)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지원사업 및 채무여부 확인 등 확인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사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후순위 과제 포함 가능)

※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할 수 있으며, 공모 유형을 변경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발표평가 및 종합심사 ※ 과제별 발표날짜,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

-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 대상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대면평가(PT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 자료는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접수

※ 발표자료(PPT, 자유양식), 사전 준비 필요, 접수기간 종료 직후 제출 예정

-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사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 종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할 수 있으며, 공모유형을 변경하여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종합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5점)	1.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15
	2.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3.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추진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	
참여인력 (10점)	1.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은 확보(정규/비정규/용역) 여부	10
	2.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3.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사업비 (10점)	1.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10
	2.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과제내용 (30점)	1. 대중성(상업성)	일반 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30
	2.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3. 유통 구체성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4.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5. 경쟁력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기대성과 (30점)	1.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30
	2.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규모	
	3. 대중적 성과	대중들의 해당과제 소비·향유 정도	
	4.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ESG (5점)	1.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5
	2.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내용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합계			100

※ 상기의 평가 기준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점검

- 종합심의 후 선정대상 과제의 주관기관(필요에 따라 참여기관도 해당) 현장 점검

○ 최종선정: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 지원범위 : 콘텐츠 제작비

- 사업자부담금(지원금, 자부담금)은 공고에 제시된 표를 준수하여 부담해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협약기간 내의 사용분만 인정
- 총 사업비 중 사업자부담금 선 집행 필수
- 세부 사업비 및 과제의 수는 종합심의(사업비 조정심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이외 사업비 편성관련 준수사항은 사업공고내용 및 사업안내문 참고

○ 지급방법 :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합격 시 2차 지원금 지급(30%)

※ 중간점검 결과 기준이 불합격인 경우 결과 보완 및 필요 시 재점검을 실시함

구분	중간점검 점수	2차 지원금 지급	비고
합격	70점 이상	2차 지원금(3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불합격	70점 미만	보완계획 수립 및 제출 후 2차 지원금(30%) 지급	과제 지속수행 또는 중단

4 기타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지침(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안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e나라도움 시스템 선정결과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정(계좌)을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참여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허위정보 확인 시 선정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음(기지급 지원비 전액 반납)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과제는 우리원 사업과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공식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 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 (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사업 선정·수행 등과 관련된 평가의 발표는 과제 책임자 이상이 진행하여야 함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제휴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에서 진행하는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 완료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4. 3. 6.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별첨 1】 지원사업 관련 용어 설명

[지원사업 관련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지원과제	▶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며 지원사업의 수행단위를 의미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서 [지원과제]란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프로젝트(콘텐츠)를 의미함
주관기관	▶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당해 지원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
참여기관 (※컨소시엄)	▶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예산 등을 부담하여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자 ▶ 주관기관과 함께 성실히 지원과제 수행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총사업비 (지 원 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지원과제수행에 필요한 총 사업비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 ▶ 총 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자부담금 비율 = 총 사업비의 10%
협 약	▶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간의 계약행위
대 표 자 (주관기관, 참여기관)	▶ 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자로서 신청과제와 진흥원의 지원사항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
과 제 책 임 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 또는 대표자로서 신청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에 관한 진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보고와 정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함
참여인력과 참 여 율	▶ 신청과제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인력으로, 여러 개의 과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각 과제당 참여율의 총합이 100%를 넘을 수 없음
e나라도움 시스템	▶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으로, 주관기관참여기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제의 신청-변경-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됨 (관련 URL : www.gosims.go.kr)

【별첨 2】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사업비 편성 지침]

1. 사업비 집행의 원칙

가. 목적 적합성 및 합리성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출만을 정산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목적 적합성은 협약서상 비목별 소요명세서에 기재여부, 집행사유의 적합성에 따라 판단
- 과도한 물량, 과도한 단가의 물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 금지

나. 지급수단

- 1순위 : 사업비 카드 > 2순위 : 계좌이체
- 사업비 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카드결제 해야 함
- 사업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인건비 등)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
- 현금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다. 집행기간

- 사업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사이에 원인행위가 발생되고 집행된 내역만 인정
-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 종료일 이후에 귀속되는 지출의 경우 사업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음(예, 사업기간 개시일 이전분 인건비를 사업기간 중 집행한 경우 불인정)
- 단, 거래 행위의 특성상 대금의 지급이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다만, 원인행위는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라.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집행액으로 인정
 - ※ 면세영리사업자(출판사 등) : 출판(면세)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과세관련 사업의 경우(예, 캐릭터 상품의 제작, 비도서류의 제작 등)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 ※ 일반과세사업자 : 매입세액 공제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급가액을 집행액으로 함
- 신용카드 매입세액 :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각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VAT 전 금액)을 집행액으로 함(단, 학교, 산학협력단, 출판사 등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급대가를 집행액으로 함)

마. 원천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의 경우 원천세 공제 전 금액을 집행액으로 함(원천세는 사업기관이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바. 규정준수

- 사업비 통장에 의한 사업비 관리 의무
- 각 사업기관의 규정에 의해 집행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진흥원의 규정을 준용

2.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산정 및 정산기준 포함)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인 건 비	보 수	< 용 도 >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참여율 인정기준 - 사업책임자의 참여율은 50% 이상 - 대표이사의 참여율은 50% 이하 ※ 대표이사가 사업책임자일 경우 50%까지 인정) - 기존인력은 최대 90%까지 - 신규인력은 본 사업 관련 100% 참여 원칙 ※ 동일인의 참여율이 타 사업 포함 총 100% 초과 불가 • 인건비 계상방식 - 실 인건비 × 참여 기간(개월 수) × 참여율 ※ 예시 : 2,000,000원 × 8개월 × 40% = 6,400,000원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 관련 자료제출 필수 ※ 3개월 급여 평균의 30% 이상을 계상할 수 없음 - 신규인력: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 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 ※ 관련 자료제출 필수 - 협약 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	계좌이체	• 원천징수 영수부, 보수규칙 등 인건비 산정근거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해당 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 신규인력의 경우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채용자는 본사업 100% 참여 시 <신규고용> 인정 ※ 신규고용 인정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한정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상 용 임 금	< 용 도 > 1.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대한 보수 < 산정 및 정산 기준 >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계약직 참여인력이 당해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인건비 계상방식 - 실 인건비 × 참여 기간(개월 수) × 참여율 ※ 예시 : 2,000,000원 × 8개월 × 40% = 6,400,000원 • 실 인건비 산정근거 - 기존인력: 최근 3개월 원천징수 영수부 근거 산정 ※ 관련 자료제출 필수 ※ 3개월 급여 평균의 30% 이상을 계상할 수 없음 - 신규인력: 기업 사규 및 취업규칙, 동일 직급 및 유사 업무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 ※ 관련 자료제출 필수 - 협약 기간 개월 수 이내의 인건비만 산정 가능 - 통상임금만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계상 불가 - 복리 후생적 성격의 임금 계상 불가		• 1개월 미만 단기근로자(일용직, 임시직), 프리랜서, 인턴 계상 불가 • 인건비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편성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주의 사항	1. 개인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24년도 연봉계약서의 보수 이상 책정불가 2. 총사업비 70% 이내 인정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일반 운영 비	일반 수용 비	< 용 도 >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우편송금수수료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전문가 자문료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 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 카드거래명세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 견적서 - 계약서 (계약사항 시) - 비용지출 기안 및 결과보고
	주의 사항	총사업비 20% 이내 인정		
	임 차 료	< 용 도 > - 장비 및 S/W 라이선스 임차료 - 엔진, 클라우드 서비스 등 S/W 관련 이용료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 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계좌이체	
	주의 사항	총사업비 5% 이내 인정		
	일반 용역 비	< 용 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 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계좌이체	
	주의 사항	용역계약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조달청 활용 입찰 필수 <입찰조건> - 일반 기업과의 계약 :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2,200만원)인 경우 - 여성,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과 계약 : 5,00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5,5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30% 이내 인정(일반용역비와 관리용역비)		

목	세목	용 도 [산정 및 정산기준]	집행방법	비고
여비	국내 여비	< 용 도 > 1. 본 사업과 관련된 관외 출장경비 • 교통비(대중교통 : 철도, 버스에 한함), 일비, 숙박비, 식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기간, 목적, 장소, 비용, 출장자, 수령확인이 가능한 출장 결과보고서 필수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여비산정기준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여비기준> 준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허용	카드사용 계좌이체	
	주의 사항	총사업비 1% 이내 인정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용 도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산정 및 정산 기준 > •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 국내결제 및 사업 기간 내 비용만 인정(해외결제 불가) •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카드사용	
	주의 사항	1. 전담기관 사업추진비 집행 기준 준용(1인당 3만원 이내,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에만 집행가능) 2. 주류 등 구매 불가 3. 총사업비 1%이내 인정		

【별첨 2-1】정산 제출서류

목	세목	내용
공통사항		*모든 세목의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아래 문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기안서 (내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인건비	보수	① 참여 인력 현황표 - 성명, 참여 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확인 ② 급여대장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계좌이체 증빙서류 ※ 신규채용 시 하단 자료 추가 ⑤ 채용계획 ⑥ 고용계약서 ⑦ 4대보험납입증명서
	상용임금	
운영비	일반수용비	①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해당 시) ③ 계약서(해당 시) ④ 회의록(전문가 자문 시, 자필서명 필수) ⑤ 외부 전문가 활용 시- 내부결재문서, 이력서, 자문확인서 및 결과보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등
	임차료	①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③ 임대(차)계약서 - 임차대상 및 기간, 보증금, 임차료 등 확인 ④ 임차 사유 및 일정 등
	일반용역비	① 입찰공고문 / 수의계약 사유서 ② 위탁사업계약서 ③ 견적서(비교 견적 2부) ④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⑤ 위탁결과보고서 ⑥ 이행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여비	국내여비	①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 산출 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영수증 : 교통 ③ 카드매출전표 : 숙박 ④ 계좌이체 내역 : 일비, 식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① 회의록(회의내용, 회의일시,회의장소, 참석자, 참석자 소속기관) ② 참가자 서명록(자필서명 필수) ③ 카드매출전표 ※ 전담기관 사업추진비 집행 기준 준용(1인당 3만원,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인 경우에만 집행가능)

【별첨 2-2】불인정 사항

공통사항	
• 협약 기간 이전 또는 협약 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금액 •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업 또는 위탁정산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경우	

목	세목	내용
인건비	보수	• 참여 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개인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차액
	상용임금	• 참여 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 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임차료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여비	국내여비	•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 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 외부기업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별첨 2-2】e나라도움 AI시스템 부정징후 탐지 관련

• e나라도움 AI시스템 부정징후 의심이 탐지되었을 경우, 별도 소명을 통해 '부정징후 의심 /과오집행/부정징후 아님'을 판단 ※ 추후 기재부 현장실사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징후 탐지 관련 대표 사례 안내 - 세금계산서 분할 거래 의심 탐지 - 가족 간 거래 의심 탐지 - 허위인력 인건비 지급 의심 사례 -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와의 거래 - 부정사례 학습을 통한 의심사업 도출 등 • 부정수급건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모두 불인정 예정
--

【별첨 2-3】국내여비 기준

[국내여비 기준]

(단위 : 원)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버스)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25,000

※ 비 고

1.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첨 3】콘텐츠 금융제도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제도 이용방법 안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금융제도>를 운영합니다. 콘텐츠가치평가 연계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콘텐츠기업 융자 지원(▲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방송영상진흥재단 융자지원 등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콘텐츠금융제도

구분	대상자격	내용	지원규모
콘텐츠가치평가	국내 콘텐츠기업	가치평가모형으로 콘텐츠를 평가, 투자사 추천을 통해 투자유치 지원	투자연계
콘텐츠특화보증	문화콘텐츠기업보증	국내 콘텐츠기업	(기획) 최대 3억원 (제작) 최대 5억원 (사업화) 최대 10억원
	콘텐츠IP보증	국내 콘텐츠IP 활용기업 (콘텐츠기업 및 이종기업)	10억원 내외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국내 콘텐츠기업	최대 10억원
문화산업완성보증	국내 콘텐츠기업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프로젝트별 15억원 내외
방송영상진흥재단 융자지원	독립제작사 및 케이블PP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시설구축 저리 융자지원	프로젝트별 15억원 내외
콘텐츠피칭플랫폼 KNOCK	진흥원 주요사업 참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IR교육, 피칭행사, 투자매칭 제공	투자연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월 ~ 11월 * 금융제도별 세부 신청기간은 해당 공고문 참고
- 사전 신청방법 : 사전 신청서 작성(<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 이메일로 송부(assess@kocca.kr) ▶ 상담전화 통해 신청 안내
- 신청방법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알림마당 ▶ 금융지원 ▶ 해당 사업공고 내 신청서 등 다운로드 및 작성, ②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assess.kocca.kr>) 기업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 전 사전상담 필수)



□ 문의방법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 FAQ 및 1:1 문의 이용
- 문의처 : 02-6441-3658, assess@kocca.kr